파주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호

2026년 제2회 파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의정홍보 촬영) 임용시험 변경공고

2026년 제2회 파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의정홍보 촬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변경공고 사유: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예정일 변경

2026년 11월 12일

파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의정홍보 촬영 (사진·영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	1년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방송 및 운영 ▪ 의정홍보영상 및 의원 공식 축사 기념 영상 촬영 및 편집 ▪ 의정홍보 사진 촬영 및 편집 ▪ 파주시의회 SNS·홈페이지 관리 ▪ 방송시스템 용역 관리 ▪ 기타 의정홍보 지원 업무

※ 최초계약 1년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 및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의정홍보촬영 (사진·영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필수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프리미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Adobe Premiere Pro) 사용이 가능한 자** ○ **파주시의회 회기(임시회·정례회) 중 근무 일정에 따라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기업에서 홍보 사진 및 영상물의 기획·구성, 촬영, 편집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위(사진학과, 사진영상학과, 영상미디어과, 영상제작과 등 홍보·영상 관련 학과) 취득자 ○ 사진기능사(국가자격증) 소지자

임용분야(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의정홍보촬영 (사진·영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Adobe Certified Professional(Premiere Pro)등 영상제작·편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또한 **주당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를 명시**하여야 함

※ **민간 경력과 공무원 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분 야	직 급	연 봉 액	근무조건	근무시간	비고
의정홍보 촬영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8,759천원	주35시간	09:00~17:00	(연봉액) 근무시간 비례 조정

❍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능력과 자격(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을 고려하여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결정(단,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 매년 정기평가를 진행하여 등급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예정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총괄)

내 용	일 정	비 고
시 험 공 고	2026. 11. 11.(수) ~ 11. 23.(월)	파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게시
응 시 원 서 접 수	2026. 11. 16.(월) ~ 11. 23.(월)	방문 및 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6. 11. 27.(금) 예정	홈페이지
포트폴리오(사진·영상) 제 출	2026. 11. 30.(월) ~ 12. 1.(화) 예정	담당자 이메일 (bestbjh01@korea.kr)
면 접 시 험	2026. 12. 7.(월) 예정	장소: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9.(수) 예정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16.(월) 09:00 ~ 11. 23.(월)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파주시의회 의정팀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의회 1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①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민원여권과에 응시수수료 납입 후**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 가능

※ 응시(직급)수수료: (8급상당/라급) 5천원

·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② 등기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하여 인정, 우편 확인을 위해 발송 후 담당자 (031-940-8311) 연락 필수**

· (응시수수료) 직급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원활한 서류심사 진행을 위해 우편접수는 2026. 11. 20.(금)까지 신청 요망**

· 우편봉투 겉면 **'파주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표는 휴대전화 메시지 통보(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6. 11. 27.(금) 예정

○ 포트폴리오(사진·영상) 제출: 2026. 11. 30.(월) ~ 12. 1.(화) 예정

○ 면접시험: 2026. 12. 7.(월)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2026. 12. 9.(수)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추가(재공고) 및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일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령 예정(개별 통보)

○ 시험방법

①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 포트폴리오 제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포트폴리오(사진, 영상) 제출 안내

▪ 제출기간: 2026. 11. 30.(월) ~ 12. 1.(화) 18:00까지

▪ 사진 (붙임 서식에 작성)

– 내 용: 행사(홍보)사진 1매, 인물중심 1매, 풍경중심 1매(총 3매) / 자유주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bestbjh01@korea.kr)로 제출기한 내 제출

– 유의사항: 제출 기한 후 제출한 내용 수정 및 보완 불가

▪ 영상 (이메일로 대용량 첨부 또는 다운로드 링크 이용 제출)

– 내 용: 1분 30초 이상 3분 이내 본인이 촬영·편집한 MP4(1GB 이하 권장) / 자유주제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bestbjh01@korea.kr)로 제출기한 내 제출, 이메일 일반 첨부가 어려운 경우 대용량 첨부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 등의 다운로드 링크(URL)를 이용하여 제출 가능

– 유의사항: 링크 제출 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 및 접근권한 설정 필요, 제출기한까지 파일 또는 링크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처리할 수 있음

※ 이메일 발송 후 수신 확인을 위해 담당자 연락(031-940-8311) 필수

※ (공통사항) 제출 자료는 심사수단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본인 촬영·편집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 포함)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미제출자,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재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 등을 재공고할 수 있음

③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정보 및 제출서류 본인 확인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방문접수) 민원여권과에 수수료 납부 후 의정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응시수수료: (8급상당/라급)5천원**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응시원서 제출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원서 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3.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	원본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로 한글파일본 전송 (bestbjh01@korea.kr)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분량 A4 용지 3매 이내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분량 A4 용지 3매 이내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분야, 성명, 생년월일, 접수일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제출	
7.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 관련 개인정보제공·이용 관련 본인 동의 확인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결격사유, 범죄경력 유무조회 관련 본인 동의 확인	
9.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 해당 자격기준 선택	
10.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 학사부터 학위증명서 제출	
11.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가능	
1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담당업무,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발행기관 직인** 필수)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자필 기재·서명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서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원본)** 제출 ☞ 팩스, 이메일출력본 불인정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 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정규직 또는 상근직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형태** 명시하여 제출)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국민연금, 고용·건강보험 납입증명서는 경력증명서로의 효력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13.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등 증빙자료 1부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증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자료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자료(어학능력자격증 제외)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발급자료만 인정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플래그(띠지) 사용 및 양면인쇄 금지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파주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분야 응시자는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 인정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간선택제 포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영리업무* 종사가 금지됩니다. *영리업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 **상기 시험일정 등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 파주시의회 채용담당자(☎031-940-8311)
- 변경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파주시의회 홈페이지(www.pajucouncil.go.kr) [의회소식 > 인사·채용] 란에 공고

직무기술서(의정홍보촬영)

임용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인원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주요업무	○ 본회의, 상임위 회의 방송 및 운영 ○ 의정홍보영상 및 의원 공식 축사·기념 영상 촬영 및 편집 ○ 의정홍보 사진 촬영 ○ 파주시의회 SNS·홈페이지 관리 ○ 방송시스템 용역 관리 ○ 기타 의회사무국 지원 업무
필요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성실성),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분석적 사고력 ○ **(전문역량)** 사진·영상 촬영 수행역량(카메라·조명·구도·색감), 현장 대응 및 상황판단 역량, 사진·영상 편집 및 후반 보정 작업 역량, 방송시스템 이해 역량, 의정활동 핵심 장면 포착 및 공공홍보 목적에 맞는 편집 능력 등
필요지식	○ 지방의회 사진·영상 촬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 ○ 사진촬영·방송시스템·영상편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지식 ○ 공공홍보 및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 사진·영상 기록물 관리 및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의정홍보 촬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프리미어 영상 편집 프로그램(Adobe Premiere Pro) 사용이 가능한 자 ○ 파주시의회 회기(임시회·정례회) 중 근무 일정에 따라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요건	○ 제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위(사진학과, 사진영상학과, 영상미디어과, 영상제작과 등 홍보·영상 관련 학과) 취득자 ○ 사진기능사(국가자격증) 소지자 ○ 주말 및 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Adobe Certified Professional(Premiere Pro)등 영상제작·편집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